

임금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 [2심]	사건유형	임금
원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외 13명	피고	○○○ 등 128명
판결선고일	[2심]2023. 12. 22. [1심]2023. 1. 19.	비고	상고취하로 2024. 1. 6. 확정
사건개요	○ 원고들은 각급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 직종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에 위배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약	○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음. ○ 위와 같이 공무원인 교사가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음.		